

의안 번호	1543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【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】</b></p> 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검 토 보 고 서</h1>
----------	------	---

## 1. 검토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9. 4. 18.(목), 강혜경 의원 외 10명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9. 5. 3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9. 5. 17.(금)

## 2. 제정이유

청년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, 구청장의 책무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- 나. 청년일자리 창출계획, 취업지원, 교육 등(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)
- 다. 청년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재정지원 등(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)
- 라. 청년일자리위원회 및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 및 제13조)

## 4. 근거법규

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3조

## 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제2항제2호의 주민복지에 대한 자치사무이며,
- 청년의 사회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.

# 근거법규

## □ 청년고용촉진 특별법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,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, 직업 지도,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·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